#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23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조승환·곽규택·이성권

김태호 · 인요한 · 안철수

유용원 • 권영진 • 정동만

김종양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적 인 역량과 자본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 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4조제1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①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생 략)	구분과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②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	
리한다.	<b>.</b>
1. <u>제24조제1항제1호</u> 의 용도로	1. <u>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u>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u>제24조제1항제2호</u> 의 용도로	2. <u>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u>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
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	
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
  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생 략)
-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생 략)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 ② ~ ④ (생 략)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 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u>.</u>
1
フト
, .
<u>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u>
<u>ૻૢ</u>
나. (현행과 같음)
2
가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
<u>ō</u>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네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제24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